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2075719 판결 [채권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항소인 1. 한국산업은행

2. 주식회사 우리은행

3. 농협은행 주식회사

4. 한국수출입은행

5. 합병된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6. 주식회사 대구은행

7. 신용보증기금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합503259 판결](#)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6,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동의 지위

1)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은 통신기계기구와 동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농협은행 주식회사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였고, 그 후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는바,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피고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각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3) 원고와 피고들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로 제정되어 2015. 12. 31.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이다.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한 "채권금융기관"으로서 팬택에게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들이다.

나. 제1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공동관리절차 개시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1) 팬택은 2014년부터 영업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2014. 2. 25. 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주거래은행인 피고 한국산업 은행에 신청하였다.

2) 이에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2. 27. 원고, 피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신한은행에게 기촉법에 따라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 통보 및 신용공여액 신고 요청을 하였다(이하 위 채권금융기 관협의회를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

3)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는 2014. 3. 5. 한국산업은행 본관 7층 소회의실이었고, 안건은 제1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호 채권 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제3호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제4호 자금관리단 파견 등이었다. 위 제1호 의안에는 '기촉 [법 제2조](#)및 [제4조](#)에 따라 팬택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하고, 기촉 [법 제4조](#)및 [제5조](#)에 의거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2호 의안에는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2014. 3.

5.부터 2014. 6. 4.까지 3개월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위 유예기간은 2014. 7. 4.까지로 연장되었다).

4) 2014. 3. 5. 개최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위 제1호 내지 제4호 의안이 모두가 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로써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위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원고 및 신한은행은 참석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14. 3. 11. 기촉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팬택에 대한 합계 112억 4,000만 원(= 기업일반자 금대출 80억 원 + 사모사채 20억 원 + 회사채 12억 4,000만 원)의 채권을 매수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다(갑 제7호증).

6)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5. 30.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금융기관들에게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2014. 7. 4.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7) 이후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2014. 7. 2. 개최되어 안건인 "제1호 채권재조정 등의 건, 제2호 이통3사의 확약서 징구 및 M&A 추진의 건, 제3호 기타사항 처리의 건"이 모두 가결되었는데, 제2호 의안에는 이통3사가 확약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1호 의안 결의내용의 이행을 유보하고, 기한 내 이통3사" 확약서 미제출로 인해 제1호 의안 결의내용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의기준일로 소급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8)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7. 28.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금융기관들에게, 이통3사 확약서 미제출로 인해 채권재조정안의 이행이 불가하여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안건이 결의기준일인 2014. 7. 2.로 소급하여 부결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제2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1) 그 후 제2기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구성되어 2014. 7. 31.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 의회가 개최되었고, 안건인 "제1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호 채권재조정 등의 건, 제3호 기타사항 처리의 건"이 모두 가결되었다.

2) 그러나 팬택은 2014. 8.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9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9. 회 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3)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8. 27.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금융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동관리절차 중단을 통보하였다.

제목 (주)팬택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중단 통보

2. 아시다시피 (주)팬택의 이통 3사에 대한 제품공급 불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4. 7. 31.자로 결의된 「(주)팬택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은 해당 결의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행할 수 없게 되었고,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주)팬택의 경영정상화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주)팬택은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고, 법원은 2014. 8. 19.자로 (주)팬택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촉 [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주)팬택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되었고, 상기 (주)팬택 제1차 채권금융기 관협의회 결의 내용도 무효화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2014. 8. 29. 원고에게 '공동관리절차가 형식적으로 개시되었으나 경영정상화 조치가 취해진 바 없이 중단된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찬성채권자가 매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채권금융기관 간의 형평성 · 공평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채권매수청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관련 민사 사건의 진행 경과

1) 한편 신한은행 역시 2014. 3. 12. 기촉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팬택에 대한 채권을 매수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고, 그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 매매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10.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을 기각하는 내용의 청구 일부 인용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3341호](#))을 선고하였다.

2) 신한은행과 피고들은 위 판결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4. 21. 신한은행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45268호](#))을 선고하였고, 2016. 5. 13. 위 판결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내지 9, 13 내지 15호증, 을 제 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촉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피고들에게 채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제1기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인 피고들은 기촉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찬성채권자이므로, 원고의 위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가 팬택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촉법의 관련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금융기관"이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채권은행"이란 채권금융기관 중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또는 제13 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이하 "채권은행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른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은「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5조(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6조(채권행사의 유예)

② 채권금융기관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소집이 통보된 7일 이내에 소집되는 1차 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라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지 못하거나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기업의 제8조 제1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8조(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6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한다.

제17조(협의회의 업무)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 여부 결정
 3.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4. 약정의 체결
 7.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제18조(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① 협의회는 재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재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재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의회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재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재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제10조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② 찬성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3. 그 밖에 해당 채권의 매수를 희망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찬성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찬성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찬성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협의회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찬성채권자(제3항 후단에 따라 위임을 받은

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는 제22조 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매수 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찬성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책임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받은 손해의 범위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채권금융기관(제2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채권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협의회회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권매매계약의 성립

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촉법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단이 전제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 기촉법 제20조 제1항은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기촉법 제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기촉법 제10조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회의결에 반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 △ 위 규정은 반대채권자의 범위,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시기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에 따른 매수 주체를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로 확정시켜 둔 점, △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채권금융기관이 기촉법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을 고려하여, 협의회회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지위를 벗어나 의사에 반하는 공동관리절차나 채권행사의 유예, 채권재조정이나 신용공여 부담을 지지 않을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위와 같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기촉법의 전체적인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기촉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반대채권자가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 권을 행사하면, 찬성채권자들의 승낙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대채권자와 찬성채권자 사 이에 반대채권자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3. 5. 개최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기촉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것으로 의제되었고,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3. 11. 기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반대 채권자인 원고와 찬성 채권자인 피고들 사이에서는 2014. 3. 11. 원고의 팬택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기촉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찬성채권자 전원이 아닌 주채권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만 채권 매수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매수 청구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촉법 제20조 제1항은 반대채권자는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 기관에 대하여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주채권 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채권 매수를 청구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다른 피고들로부터 채권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주채권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에게 원고가 채권 매수를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원인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4. 3. 11. 주채권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채권 매수를 청구한다고 통보한 후 피고들은 당시에 이르기까지 약 2년이 지나도록 원고가 피고들 모두에게 채권 매수 청구의 의사표시를 각각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다음날인 2014. 3. 12. 주채권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 에게만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보하였는데, 피고들은 신한은행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신한은행이 피고들 모두에게 채권 매수 청구의 의사표시를 각각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② 또한 이 사건 2014. 7. 2.자 제1기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에 따르면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주채권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에게 행사하도록 안내되어 있고, 팬택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채권은행에게 위임하도록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③ 피고 하나은행, 대구은행도 이 사건 2014. 7. 31.자 제2기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결정에 반대하면서 주채권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에게만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보하였다.

④ 채권금융기관들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주채권은행에게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를 통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무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2016. 3. 18. 법률 제14075호로 제정된 기촉법 제27조1)가 반대채권자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찬성채권자는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관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존 관행 및 주채권은행의 역할과 앞서 본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반대채권자들의 채권매수청구권 통보의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사이에서 주채권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찬성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을 위하여 원고의 채권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공동관리절차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공동관리절차 개시 이후 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경영 정상화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지 못하여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공동관리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인 2014. 7. 4.까지 팬택의 경영정상화 약정이 체결되지 못하여 공동관리절차가 기촉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이상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채권매매계약은 실효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채권금융기 관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결의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기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이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약정이 체결되지 못하여 이미 개시된 공동 관리 절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반대 채 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기촉법 어디에도,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약정이 체결되지 못하여 이미 개시된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 공동관리절차개시 결의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행사한 채권매수청구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실효된다고 볼 만한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기촉법 제6조 제3항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공동관리절차가 다음날부터'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② 기촉법에서는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와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공여'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경영정상화 약정의 체결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와 구분되는 절차로서 따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예정하고 있는바,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을 실질적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로 본다면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 시점이 아닌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시점에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이유가 없다(2016. 3. 18. 법률 제14075호로 제정된 기촉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하면서도 여전히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도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촉법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사유 및 그에 따른 찬성채권자의 채권매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기촉법이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협의회의 의결에 구속되지 않을 반대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런데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반대채권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바, 찬성채권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경영정상화 약정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소멸된다거나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이 실효된다고 보는 것은 공동관리절차에 관여하지 못한 반대채권자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④ 만약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이 경영정상화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해석한다면,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채권자가 실제로 자신의 예측과 판단이 부합한 경우임에도 실제로 기촉법이 보장하고 있는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반대채권자의 채권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과 상충된다.

⑤ 원고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을 부실 징후기업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결국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 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로 가져가는 이익은 신속한 채권 회수에 그치고, 그 예상대로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한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찬성채권자는 부실 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성공하여 채권 회수율을 높임으로써 공동관리절차 개시 당시 보유한 채권 및 매수한 채권의 실제 가치 또는 매수가액보다 더 많은 이익을 공동관리 절차를 통해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가, 경영정상화에 성공하면 그 기대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경영정상화가 실패하더라도 결국 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자신 이 기존에 보유한 채권 및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수한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므로, 예상과 달리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실패하였다고 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채권자보다 언제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것도 아니다.

⑥ 특히 이 사건에서 만약 이동통신 3사가 팬택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함으로써 팬택이 경영정상화에 성공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의 팬택에 대한 채권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미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채권자인 원고가 그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반대로 이동통신 3사가 팬택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지 않기로 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의 팬택에 대한 채권의 가치가 추가로 하락하였더라도, 이미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채권자인 원고가 반드시 그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고들과 함께 부담하여야만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⑦ 기촉법 제20조 제4항에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약정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경영정상화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양도의무 및 통지의무와 피고들의 매수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고 팬택에게 채권양도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적어도 채권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 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의 팬택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기촉법 규정에 따른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찬성채권자인 피고들에게 곧바로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의 경우 기촉법 규정에 근거한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채무자인 팬택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룰 가능성이 거의 없고, 채권의 이중양도나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거의 없으므로, 원 고의 채권양도통지의무와 피고들의 매수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그에 따라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들이 채권매매대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매수청구 채권의 범위 및 매매대금의 결정

가. 원고의 팬택에 대한 채권의 범위

1) 먼저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팬택에 대하여 합계 100억 원의 대출채권 및 사모 사채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매수청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던 12억 4,000만 원의 회사채 관련 채권(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팬택이 발행한 12억 4,000만 원의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회사채는 원래 원고가 주식회사 팬택앤큐리텔(이하 '팬택앤큐리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었는데, 2009. 12. 30. 팬택앤큐리텔이 팬택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팬택이 위 채무를 승계한 사실, △ 팬택앤큐리텔이 팬택에 흡수합병되기 전인 2007. 3. 26. 당시 팬택앤큐리텔에 대하여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진행중이던 채권은행자율협 의회는 '원고의 팬택앤큐리텔에 대한 197억 1,400만 원의 채권 중 122억 2,300만 원을 출자전환하고,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채권은 이자면제채권으로 보유하며, 이자면제채권은 2011. 12. 31.까지 출자전환(또는 사채발행가능시 의무전환 사채)하기로 하되 당해 기업의 채권은행 공동관리가 중단될 경우 출자전환된 것으로 처리한다 · '라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 원고는 당시 109억 8,300만 원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을 하였으나 나머지 12억 4,000만 원(이 사건 회사채이다)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을 실행할 경우 펀드 약관에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출자전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팬택에 대한 공동관리절차 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팬택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검토 보고서(갑 제10 호증)'에서 이 사건 회사채를 제외한 100억 원의 채권만이 원고의 팬택에 대한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채는 원고에게 출자의무가

부가되어 있거나 위 의결에 따라 이미 출자전환된 것으로 의제된 채권이어서 팬택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촉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채권매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매매대금의 결정

1) 기촉법 제20조 제3항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의 매수 가액은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채권의 매수가액에 관하여 상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관한 조정이 신청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의 가치와 재산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인정한 상당한 가액 으로 매수가액이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매수가액 결정의 기준시점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2014. 3. 11.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매수청구한 채권의 적정한 매매가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촉법 규정에 따른 채권매수청구권의 인정 취지와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외부전문기관이 평가한 팬택의 청산가치에 따른 채권회수율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팬택에 대한 채권의 청산가치에 따른 채권회수율에 관하여, △ 원고는, 팬택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팬택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검토 보고서'에서 평가한 청산가치 회수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피고들은,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평가한 청산가치 회수율 4.93%(을 제4호증 중 204쪽 참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위 안진회계법인 작성한 위 보고서의 실사기준일(2014. 2. 28.)이 삼정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조사기준일(2014. 8. 19.)보다 위 매매계약 성립일 (2014. 3. 11.)에 훨씬 가까운 점, △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청산가치 회수율은 팬택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아 원고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개별 채권의 청산가치를 평가한 것인 반면,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청산가치 회수율은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조사위원 지위에서 평가한 것으로 그 평가 당시 상황이 원고의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와 달라진 점, △ 삼정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는 담보채권자가 보유한 개별 담보물의 가치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는 원고를 비롯한 개별 금융채권자들의 채권회수액이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2014. 3. 11.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팬택에 대한 채권의 적정한 매매가액은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팬택의 청산가치 회수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위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팬택에 대한 100억 원의 채권 중 담보채권 24억 원의 청산가치 회수율은 100%이고, 무담보채권 76억 원의 청산가치 회수율은 8.77%이며, 이를 총 채권인 100억 원에 대한 청산가치 회수율로 환산하면 30.67%인바(갑 제10호증 35, 36쪽 참조),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팬택에 대한 채권의 매매가액은 30억 6,700만 원(= 100억 원 x 30.67%)이 된다.

3) 한편 기촉법 제20조 제2항에서 찬성채권자는 채권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6개월의 기한은 채권매매대금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참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3. 11. 성립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4. 9.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권매매대금 3,0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4. 9.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김유진 판사 박해빈

1) 제27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한 금융채권자(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이하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금융채권(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전부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일까지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매수청구기간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채무조정
4. 신규 신용공여
5. 공동관리절차의 연장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 ② 찬성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반대채권매매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찬성채권자(찬성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협의회를 포함한다)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수가액은 반 대채권자가 해당 기업의 청산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④ 찬성채권자는 반대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찬성채권자 또는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는 제29조의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찬성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주채권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알려야 한다.

2) 원고는 제1심에서 위 12억 4,000만 원의 회사채 관련 채권 역시 채권매수청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심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는 않다.